

## □ 안전조업의 길 □

국장 강일성  
속초어업무선국

### 1. 머리말

바다는 우리 어민에게 풍부한 식량자원을 공급하여 주는 무한히 고마운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의 장소이기도 하다.

수산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각종 해난사고 예방은 소득증대 보다도 더 중요한 실정이다.

수협중앙회 해난사고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해 동안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중 251척이 해난사고를 당하여 다행이도 173척은 구조되었으나 78척은 실종 또는 침몰되고 166명의 아까운 인명피해를 당했다. 또한 해양경찰대 자료에 의하면 해난사고의 88%가 어선의 해난사고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선사고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불가항력적인 자연적 요인보다는 운항 부주의, 기관 취급 불량 및 안전수칙 미준수와 기상 불량시 무리한 조업 및 운항 등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임을 볼 때 우리 어민 모두가 합심하여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만 기울인다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 어민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어선 안전조업 관계 규정을 중심으로 알아 보기로 한다.

### 2. 출입항 신고

선박이 항, 포구에 출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선원명부를 첨부한 출입항 신고서를 출어조업 해역에 따라 아래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어선 구비서류 확인증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어선 구비서류 확인증은 그 어선의 선적항에 설치된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에서 발급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선박검사증,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무선국 허가장 및 어업무선국 가입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출항 후 신고한 조업장소, 기항지 또는 귀항 예정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없이 어업무선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출입항 신고기관

- 통제소 :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일반해역 출어선 통제
- 합동신고소 : 조업자제해역, 일반해역 출어선 통제
- 신고소, 대행신고소 : 일반해역 출어선 통제

### 3. 어선출어등록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에 출어등록 신청서에 의하여 출어등록을 하여야 하며 출어등록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이 허가, 면허 또는 신고된 어선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4. 어선안전점검

모든 어선은 출항 전 선장의 자체점검과 출입항 신고 후 안전점검 요원이 직접 실시하는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전점검 후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여 출어할 수 있다.

##### 확인점검 사항

- 어선구비서류 확인증
- 어민교육 이수증
- 어선검사 유효기간
- 해기사 면허장
- 선박통신사 자격증
- 선원수첩
- 나침의 작동상태
- 해도
- 구명동의
- 무전기(5톤이상 선박)
- 등화

#### 5. 어선단조업

##### 가. 선단편성

특정해역, 대화퇴해역, 서해 선단편성 강화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의 수협요원이 업종, 성능, 지역 및 선장간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3척 이상(대형 기선저인망어선 2통, 대형 선망어선 1통 이상), 조업자제해역 및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해역을 제외한 일반해역은 2척 이상으로 서로 어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 후 출어 조업하여야 한다.

##### 나. 선단조업

동일 어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의 선장은 지휘능력과 어선의 성능을 참작하여 수협요원이 지정한 선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출입항하고 가시거리 내의 동일 어장에서 조업하여야 하며 해난 발생시에는 서로 구조에 협조하여야 한다.

##### 다. 선단이탈

조업 중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조기만선, 일반 안전해역으로 조업장소의 이동 및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단에서 이탈이 불가피한 때에는 어업무선국을 통한승인을 얻어 이탈할 수 있다. 선단이탈로 인하여 잔류어선이 기상 악화시를 제외하고 1척일 때에는 그 어선을 다른 어선단에 편입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 라. 선단편입

이탈의 승인을 받고 일시 귀항한 어선이 다시 출어할 때, 선단을 편성하여 출어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기관의 출항승인으로 본래의 선단에 복귀하거나 다른 어선단에 편입할 수 있다.

#### 6. 출입항의 제한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 포구에는 선박이 출입항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항 또는 기관고장으로 표류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경유신고

동해 대화퇴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출입항시 344해구 또는 924해구를 경유하여야 하며 경유시에는 출항지 어업무선국에 항해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 나. 대화퇴해역 출입항로(강원도 관내어선)

○ 속초 통제소의 통제를 받은 어선은 주문진항까지 남하하여 울릉도 북방 10마일 이남 수역을 항해하여 344해구를 경유하여야 한다.

○ 주문진, 동해, 삼척통제소의 통제를 받은 어선은 울릉도 북방 10마일 이남 수역을 항해하여 344해구를 경유하여야 한다.

○ 입항로는 출항로의 역순으로 한다.

#### 다. 입항절차

강원도 관내어선이 귀항시 또는 타 시, 도 어선이 강원도 관내 항구에 입항시 울릉 어업무선국에 경유일시, 선명, 소속 선단명, 도착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7. 어로 또는 항해금지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관계 장관의 요청시에는 일정해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 지정된 해역에서 항해 또는 어로를 금지 할 수 있으며, 직할시장, 도지사가 당해시, 도 방위협의회와 협의 조정하여 고시한 해안선 또는 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는 아래 시간 중 어로와 항해를 금지한다(지역특성에 따라 완화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 4월 1일 ~ 10월 31일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 11월 1일 ~ 3월 31일 :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 8. 월선금지

어선은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해역의 자제선을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아래 해역내에서는 주간에 한하여 지선 어선에 의한 어로 또는 항해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관의 장은 당해 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 강원도 고성군 저도주위 300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고성군수협 대진지소 소속 어선의 경우 4월 1일 ~ 9월 30일까지만 어로를 할 수 있다.

○ 대연평도 주위의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

1) 대연평도 최동단

2) 북위 37° 30', 동경 125° 50'

3) 북위 37° 25', 동경 125° 50'

4) 북위 37° 25', 동경 125° 35'

5) 북위 37° 30', 동경 125° 35'

6) 북위 37° 36'48", 동경 125° 40'

7) 대연평도 최서단

○ 백령도, 대청도 및 소청도 주위의 다음의 각 점과 선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이내의 해역

1) 북위 37° 55', 동경 124° 36'

2) 북위 37° 59'30"동경 124° 36'

3) 북위 37° 59'30"동경 124° 40'

4) 북위 37° 59', 동경 124° 40'

5) 북위 37° 59', 동경 124° 40'

에서 백령도의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 부터 800미터의 선.

6) 소청도의 최동단 정동해상 1마일의 점.

7) 북위 37° 43', 동경 124° 47'24"

8) 북위 37° 43'동경 124° 43'40"

9) 북위 37° 44'45"동경 124° 43'40"

10) 북위 37° 47'45"동경 124° 39'45"

11) 북위 37° 52'동경 124° 39'45"

12) 북위 37° 55', 동경 124° 37'06"

130 북위 37° 55'동경 124° 36'

### 9. 특정해역 내의 어로제한

특정해역 출어선은 통신시설, 나침의, 해도, 구명동의, 조석표, 라디오 등의 각종 장비를 갖춘 동력선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해역 인접 지역의 어민이 보유하는 무동력선과 10톤 미만의 어선은 예외이나 닻과 노를 비치하여야 하며 10

톤 미만의 어선은 동해에서는 동경  $131^{\circ} 00'$  이동해역, 서해에서는 동경  $125^{\circ} 00'$  이서해역에 출어 할 수 없으며 다만 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조업하는 어선은 울릉도 주위 60마일까지 출어할 수 있다.

## 10. 특정해역 이외의 어로제한

### ○ 동해

어로한계선과 어업자원 보호선의 교차점에서 정동으로 연결한 선의 이북 해역에는 20톤 미만 어선은 출어할 수 없다.

### ○ 서해

어로한계선과 아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서는 3월 1일 ~ 10월 31일까지 각종 장비를 갖춘 어선에 한하여 어로를 할 수 있다.

- 1) 북위  $37^{\circ} 30'$ , 동경  $126^{\circ} 00'$
- 2) 북위  $37^{\circ} 30'$ , 동경  $126^{\circ} 16'$
- 3) 석모도 최남단
- 4) 주문도 최남단

○ 강화도 서방의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과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서는 지선 어선에 한하여 주간어로를 할 수 있다.

- 1) 주문도 최남단
- 2) 석모도 최남단
- 3) 석모도 최북단에서 정동으로 연장하여 강화도 서단에 이르는 선.

## 11. 어업무선국에 가입 및 위치보고

### 어업무선국에 가입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선적항 또는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어업무선국에 교신가입을 하고 어업무선국 가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위치보고

어선은 특정해역 출어서 동해에서는 속초 어업무선국, 서해에서는 인천 어업무선국에, 기타해

역 출어선은 출항지 어업무선국에 아래 회수의 조업위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단조업을 할 때에는 선단장선이 선단선의 위치를 함께 보고할 수 있으며 교신이 불가능 할 때에는 가까운 어업무선국에 중계토록 하여야 한다.

- 1) 특정해역 출어선 : 1일 3회이상
  - 2) 대화퇴, 황해, 동중국해 출어선 : 1일 3회 (비상시 1일 6회)
  - 3) 조업자제 해역과 삼척항 북단에서 북위  $37^{\circ} 27'$ , 동경  $130^{\circ} 30'$ 에 이르는 선과 북위  $35^{\circ} 15'$  선내의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10톤 이상의 어선 : 1일 2회 이상
  - 4) 일반해역 출어선 중 대형 트롤어선, 서해 북위  $36^{\circ}$  이북해역의 10톤 이상 어선, 동해북위  $36^{\circ} 30'$  이남, 동경  $128^{\circ}$  이동해역의 장어통발 어선 : 1일 2회
  - 5) 일반해역 출어선 : 1일 1회이상
  - 6) 선단이탈 단독 귀항선 : 4시간 마다
- 통신기 고장으로 위치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려 위치보고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12. 식별신호의 이행

어선은 신호기, 신호등 기타 필요한 장구를 비치하고 항해 또는 조업 중에는 규정된 식별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 13. 의아선박 보고

어선이 항해 또는 조업 중 의심스러운 선박 또는 물체를 발견한 때에는 일시, 위치, 승선자, 항해방향, 항해목적 등 관찰사항을 구체적으로 인근 어업무선국에 보고하고 가능한 한 의아선박의 행동을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통신기가 없는 어선은 인근 선박에 보고를 의뢰하고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귀항즉시 인근 경찰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14. 경보청취 의무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매시 정각부터 3분간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 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하며 라디오를 비치한 선박은 매 뉴스 시간마다 경보에 관한 뉴스를 청취하여야 한다.

## 15. 위험 및 대피신호에 대한 대비

선장은 경비함정 또는 지도선으로 부터 주간에 기척을 장성으로 5회 이상 또는 야간에 발광을 단부호로 10회 이상의 신호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대비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대피상황을 어업무선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6. 정선명령의 준수

선장은 경비함정 또는 지도선으로 부터 주간에 정선명령 신호기 또는 야간에 기척 또는 발광으

로 정선명령 신호를 받은 때와 우리나라 항공기가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을 투하할 때에는 정선하고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17.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교육

어선의 간부선원은 조합장이 실시하는 매년 1회 4시간의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선원에 대하여는 교육내용에 대해 전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어로보호 본부장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하여 업종별로 성어기 전에 연1회 2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8.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모든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 아래 어선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 요원의 지시와 안전장비 확인에 따라야 한다.

### 기상악화시 어선 조치 및 준수사항

주의보 및 경보 명칭	기상상태	조치 및 준수사항
파랑주의보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3미터 이상이 예상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톤 (구톤수 20톤) 미만 출항금지</li> <li>15톤 (구톤수 20톤) 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li> <li>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파랑경보	폭풍현상이 없이 해상의 파도가 6미터 이상이 예정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어선 출항금지</li> <li>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li> <li>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주의보 및 경보명칭	기상상태	조치 및 준수사항
해일주의보	해저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출어선 항해주의</li> <li>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li> <li>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해일경보	해저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지대의 상당한 침수가 예상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출어선 항해주의</li> <li>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li> <li>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폭풍주의보	평균 최대풍속이 14m/s 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 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 최대풍속이 20m/s 이상 예상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톤 (구톤수 20톤) 미만 출항금지</li> <li>15톤 (구톤수 20톤) 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li> <li>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폭풍경보	평균 최대풍속이 20m/s 이상으로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 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 최대풍속이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어선 출항금지</li> <li>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li> <li>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폭풍우주의보	폭풍주의보 상태에서 비가 1시간에 20mm 이상 내릴 것이 예상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톤 (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li> <li>15톤 (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li> <li>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폭풍우경보	폭풍경보 상태에서 비가 1시간에 30mm 이상 내릴 것이 예상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어선 출항금지</li> <li>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li> <li>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폭풍설주의보	폭풍주의보 상태에서 눈이 1시간에 5cm 이상 내릴 것이 예상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톤 (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li> <li>15톤 (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li> <li>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주의보 및 경보명	기상상태	조치 및 준수사항
폭풍설경보	폭풍 경보상태에서 눈이 1시간에 10cm 이상 내릴 것이 예상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어선 출항금지</li> <li>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li> <li>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태풍통보	태풍내습이 예상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출어선 항해주의 및 황천준비</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다소 피해가 예상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어선 출항금지</li> <li>전 출어선 신속 대피</li> <li>전 어선 황천항해 및 안전조치</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태풍	태풍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어선 출항금지</li> <li>전 출어선 긴급 대피</li> <li>항내어선 안전계선 및 안전지대 이동 대피 (소형어선 육성 인양)</li> <li>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li> </ol>

## 19. 맷음말

위에서 어선 안전조업 관계 규정을 중심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어민은 해난사고와 접적해역에서의 월선피납 방지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잘 숙지하여 스스로 준법정신을 발휘하므로써 과거 불행한 해난사고를 거울삼아 한척의 어선이라도 불의의 재난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어민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수산업법
- 선박안전조업 규칙(4부합동부령 '89. 4. 13)
- 선박통제규정(4부합동훈령 '87. 12. 1)
-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규제 사항  
(수산청고시 제89-14호 '89. 4. 18)

대화중에 통신보안 업무중에 문서보안